

부천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0. 4. 20

나. 제출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2000. 4. 21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00. 5. 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폐지이유

○ 도서관의 발전과 독서진흥에 관한 정부의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나,

○ 그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존치의 필요성이 적으므로 동위원회를 폐지하도록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법률 제6126호(2000. 1. 12)로 개정되어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동조례 폐지”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본 조례 상위법의 개정으로 폐지되는 것인가, 다른 이유가 있는가?	○ 금년 1월 12일자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개정되고 운영실적 저조로 존치의 필요성이 적으며, 도서관운영조례와 중복되어 폐지하려는 것임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319호
의결년월일	2000. 5. 3 (제78회)

제출년월일 : 2000. 4. 20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폐지이유

- 도서관의 발전과 독서진흥에 관한 정부의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나,
- 그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존치의 필요성이 적으므로 동위원회를 폐지하도록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법률 제6126호(2000. 1. 12)로 개정되어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동조례 폐지”

철 부

- 부천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

부천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부천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 [1996. 2. 29]
조례 제1411호

개정 1996. 7. 18 조례 제1435호

1997. 5. 20 조례 제1505호

1998. 10. 10 조례 제160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도서관 및 문고와 관련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2. 부천시 교육·문화계 인사와 기타 도서관·문고 및 독서업무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 3.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명

④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도서관 및 문고의 발전과 독서진흥을 위한 시책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도서관 운영 및 도서관 자료의 구성에 관한 사항
- 3. '독서의 달' 행사 등 각종 독서진흥운동 계획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 4. 도서관, 이동도서관 및 문고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 5. 기타 도서관 및 문고의 발전과 독서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제안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회의는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개최한다.

②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시립도서관장으로 하고, 서기는 도서관관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7조(회의록)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6. 2. 29 조례 제14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7. 18 조례 제1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5. 20 조례 제15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0. 10 조례 제1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